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2. 2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2월 10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2월 1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1. 2.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명확한 조례 구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보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의견 제시로 수정(안 제4조의2제5호)
-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항을 추가하여 보완(안 제4조의2제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의견제시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완·정비하는 것임.
- 기타 부분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4 호
----------	--------

제출연월일 : 201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명확한 조례 구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보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 가격조사평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

(안 제4조의2 제5호)

나.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사항을 개별주택가격 정정사항을 추가하여 보완

(안 제4조의2 제6호)

다.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부과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 1.13 ~ 2.7,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인이내”를 “7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8인이내”를 “8명 이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6호 중 “비영리민간단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4조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조의2제5호 중 “사항”을 “의견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개별공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로 한다.

제6조의2 중 “3 내지 7인의”를 “3명 이상 7명 이하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업무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 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에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중 7인 이내 2.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8인 이내</p> <p>제3조(위원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 사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 이 위촉한다. 1. ~ 4. (생략) 5.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이론을 전공 한 조교수 이상인 자</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 ----- ----- 제51조에 따라----- ----- ----- -----.</p> <p>제2조(구성) ① -----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 ② ----- -----. ③ ----- 각 호의 사람 ----- -----. 1. ----- 7명 이내 2. ----- 사람 -- 8명 이내</p> <p>제3조(위원위촉) ----- ----- -----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 ~ 4. (현행과 같음) 5. ----- ----- 사람</p>

현행	개정안
<p>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7. (생략)</p> <p>8. 기타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p>	<p>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2조에 따른 -----)----- 사람</p> <p>7. (현행과 같음)</p> <p>8. 그 밖에 ----- ----- 사람</p>
<p>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 --- 사무를 총괄하고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 2(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5. 표준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p> <p>6.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p> <p>7.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4조의2(심의사항) ----- 각 호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의견제시</p> <p>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p> <p>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 -----.</p> <p>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회의 및 의결) ① ----- -----.</p> <p>②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p>